

#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규정

제정: 2025.11.17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근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, 교육부 「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」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습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외국인 유학생'(이하 '유학생'이라 한다)이라 함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이나, 본교와 외국대학 간 교류를 통하여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교환, 방문, 복수·공동 학위를 포함한 교류학생을 말한다.

**제3조 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 유학생 관리업무에 적용된다.

## 제2장 담당 지정 및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

**제4조 (총괄관리 부서 및 담당자)** ① 유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관리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호·관리한다.

- 1 유학생 전체 총괄관리 부서 및 담당자: 대외협력처 및 소속 직원 1명

② 총괄관리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본교에 입학한 유학생이 한국 생활과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2. 유학생의 출입국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며,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함께 관리한다.

**제5조 (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)** ① 제4조의 총괄관리 담당자(이하 "담당자"라 한다)가 지정 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총괄관리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유학생 현황을 매년 2월, 5월, 8월, 11월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총괄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.

1. 입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한 경우(다만, 전형에 합격한 후 미등록한 자 중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제외)

2. 제적·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 종료된 경우
3.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
4.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
5. 휴학을 한 경우

### 제3장 입학 및 학사 관리와 지원

- 제6조 (입학 관리 및 지원)** ① 유학생은 교육부의 「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」에 의거하여 본교의 당해연도 입학전형에 따라 선발한다.
- ② 총괄관리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·발급하고, 사증발급을 지원한다.
- 제7조 (유학생 학사 관리)** ① 외국인 학생이 수업에 연속 2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지체 없이 스쿨원장에게 통보하고, 스쿨원장은 총괄관리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각 스쿨은 유학생에게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 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8조 (수강의 의무)** ①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추진 계획에 따라,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수강의 의무를 갖는다.
1. 유학생은 연 1회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  2.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동영상 강의(비대면이면서 비실시간 강의를 의미한다.) 수강은 해당 학기 총 이수학점의 30% 이하로 제한한다.
- ② 총괄관리 부서는 유학생에게 한국법령 이해교육을 제공하며, 유학생 수강의무 사항의 이행을 여부를 점검한다.
- 제9조(교육지원)** ① 총괄관리 부서는 외국인 학생의 학업 및 유학생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, 강의 또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, 운영한다.
- ② 유학생 교육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1. 수강신청 지원 : 유학생이 소속된 스쿨 혹은 학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유학생이 도움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과 관련 스쿨(학과)의 협조를 통해서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.
  2. 유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 멘토링 관련
    - 가. 유학생이 학습멘토링을 요청할 경우 학습도우미 모집 및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  - 나. 전공 내 학습 동아리를 통한 협력 학습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졸업 요건 한국어 기준)** ①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TOPIK (한국어능력시험)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.

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「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」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, 예체능계열의 재학생인 경우 본교에서 제공하는 정규의 한국어 과정을 9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## 제4장 학생 생활 관리 및 지원

**제11조 (학생 상담)** ① 유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별도로 상담일지를 작성한다.

② 유학생 총괄관리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로 상담일지를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장학 지원)** 유학생의 장학 지원은 본교 장학 규정에 의거하며, 총괄관리 부서는 유학생에게 교내 장학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취업 지원)** 총괄관리 부서 및 본교의 취업 관련 부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인턴십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홈페이지 공지,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. 단,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안내를 실시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상해 보험)** 연수생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,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 부서는 이를 유학생에게 안내하고 해당 학생이 제반 업무를 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(건강 보험)** ① 유학생은 재학 중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총괄관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 및 학교 단체보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**제16조 (위기 관리)** 유학생의 위기관리는 본교 학생의 위기관리 기준을 따른다.

**제17조 (유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)** 총괄관리 부서는 유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.

**제18조 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·동 시행령과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3장 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